

2023 법인세 신고대비
개정 및 실무이슈

HIT THE SPOT SERIES 2



2023시행 개정세법에 따른
이연법인세효과



YOUR BEST HRD PARTNER
씨에프오아카데미
www.cfoid.com



TEL (02)

501-2322

FAX (02)

561-6581

개정세법에 따른 2022년 결산시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세부적 고찰

1 2023년 시행 법인세법(세율개정)에 따른 2022년 이연법인세 인식

기업회계기준(K-IFRS, 일반기업회계기준)의 이연법인세자산·부채는 미래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평균세율을 추산하기가 어려워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. 2023.1.1.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%포인트씩 인하함(법인세법 제55조제1항)에 따라 이연법인세 적용세율이 수정된다. 따라서 결산일이 2022.12.31.인 법인은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하여야 한다.

과세표준	개정 세율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9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천8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)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7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)
3천억원 초과	625억8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)

예를 들어 종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서 22%(=20%×1.1)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던 법인은 개정세법에 따라 20.9%(=19%×1.1)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자산·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.

2 지분법 등의 지분법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방법

회계기준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분법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한다.

(차)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,000 (대) 지분법이익 1,000

*세무조정: (손금산입) 지분법주식 1,000(△유보) 지분율

(차) 법인세비용 209 (대) 이연법인세부채 209(=1,000*20.9%)

(차) 이연법인세부채 105 (대) 법인세비용 105

- 회계이익에 기초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(비상장 지분율 50%가정): 1,000×50% = 500

- 이연법인세부채 차감액: 500×20.9% = 105

2023.1.1.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은 익금불산입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, 외국자회사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으로 전환한다. 따라서 내국자회사, 외국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손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고려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.



개정세법에 따른 2022년 결산시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세부적 고찰

제18조의2 (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

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	익금불산입률
50퍼센트 이상	100%
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	80%
20퍼센트 미만	30%

제18조의4 (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)

① 내국법인(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)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[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)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]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수입배당금액”이라 한다)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

YOUR BEST HRD PARTNER
씨에프오아카데미
www.cfoid.com



TEL

(02)

501-2322

FAX

(02)

561-6581